

[별표 4]

포상금 지급기준(제72조제1항 관련)

신고 또는 고발사항	해당 법조문	포상금지급기준 (건당)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	법 제52조제1항	10만원
2. 법 제3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	법 제52조제2항	30만원
3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	법 제52조제3항	50만원
4.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	법 제52조제4항	10만원
5.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	법 제52조제4항	50만원
6.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	법 제52조제5항	30만원
7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	법 제52조제6항	30만원